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0호,
2019. 4. 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23호,
2019. 4. 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치매관리법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08호, 2019. 4. 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치

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8. 1.] [법률 제16406호, 2019. 4. 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21호, 2019. 4. 30., 제정]

1.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 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구간인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7조 및 제8조).

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9조).

마.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허가 절차에 따르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10조).

바.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

- 는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11조).
- 사. 시범운행지구에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12조).
- 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13조).
- 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회신하도록 함(제14조).
- 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제19조).
- 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제20조).
- 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추진,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법제처 제공〉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04호, 2019. 4. 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신설).
- 나.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 다. 시·도지사 등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3제2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31호, 2019. 4. 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현재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 앞으로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업자조합 공제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 규정이 없어 공제회 운영과 사업추진 시 재원 마련과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